

「군포도시공사 투자심의위원회」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
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 희



2020년 6월 12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34호

군포도시공사 투자심의위원회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

군포도시공사 투자심의위원회 운영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위원회 자격) 제1항 제1호 중 “경영기획본부장” 을 “본부장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개발사업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개발사업부장 배 진 윤
	담당 성명 (전화번호)	최 중 환 (390-0976)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제3조(위원의 자격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	제3조(위원의 자격) ① _____ _____.	
1. 공사 <u>경영기획본부장</u> , 예산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, 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	1. --- <u>본부장</u> , _____ _____	
2. <생략>	2. <현행과 같음>	
3. <생략>	3. <현행과 같음>	
4. <생략>	4. <현행과 같음>	
5. <생략>	5. <현행과 같음>	
6. <생략>	6. <현행과 같음>	
7. <생략>	7. <현행과 같음>	
8. <생략>	8. <현행과 같음>	
② <생략>	② <현행과 같음>	